이 자료는 05.6.27(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

담당과	기후변화대책팀
담당자	조영신 팀 장 서기웅 사무관 이상헌 사무관
전화번호	2110-5427

천리안·하이텔: go epic, 나우누리: go mocie, 인터넷: www.mocie.go.kr

가

- 온실가스 등록사무소 開所(7월) 및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을 개시(하반기)
- 자발적 사전감축자. 추후 의무할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 업종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개발 등 업종별대책반 활동 강화

1. 가

- □ 교토의정서가 발효('05.2.16)된 가운데 기업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 기업들이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
 - 먼저,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금년 7월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개소('05.7.14)하고 年內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사전감축자에 대해 추후 의무부담이행 단계에서 감축의무 할당이나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여.
 - 사전 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

- □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협상의 내용 및 시기가 확정된 이후 결정할 예정
 - 현행 교토의정서는 EU・일본 등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할 것을 규정한 국제 협약(우리나라는 非의무부담국)이며.
 -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부담에 관해서는 금년말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11.28-12.9, 몬트리올)부터 2007년 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협상이 시작될 예정으로,
 - 향후 협상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의무 내용 및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체적 보상방법은 추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
- □ 이 조치에 따른 예상 등록사업 건수는, 현재 추진중인 3,400여건의 지발적 협약 사업 중 등록최소 감축규모(500tCO₂) 이상인 1,000건 정도이며, 최대 7백만tCO₂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자발적 협약: 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에 기초,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
 - * 자발적협약 사업의 '03년도 에너지사용 절감율(3%) 적용시, 등록대상 사업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은 최대 7.16백만tCO2로 추정
 -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등록 참여 촉진을 위해 등록관련 소요
 행정비용을 예산 범위내 지원하고,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1,23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3,259억원) 등의 정부예산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들에 등록 권장

- □ 금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약속은 정부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2항을 근거로 추진하며, 금년 2월 수립한 제3차 종합대책('05-'07)의 90개 세부 실행 대책중의 하나로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

- □ 산자부는 지난 6.17(금) 발전·정유 등 **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대책반 활동('04.12 구성)에 대한 상반기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
 - 상반기 활동점검 결과, ①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 ②'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지침 및 양식'을 개발(발전, 정유, 철강 업종 '05.3월 완성, 나머지 5개 업종 금년말 완성)하여 업종별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고.
 - ③ 외국 선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업종별 자발적 감축계획 수립활동을 수행
 - * 8개대책반: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반도체, 자동차

- □ 향후, 산자부는 이미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최근 6.1-2일 **OECD 지속가능발전 각료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이 아닌 **업종별로 부여하는 방안**(sectoral approach)**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 * 부문별 목표설정(Sectoral Targets): 국가 전체적으로가 아닌 부문 또는 여러 부문(발전·정유·철강 등 주요업종)에 대해 배출 감축 목표를 定하는 방법('05.6.1-2, OECD 지속가능발전 각료회의에서 논의)
 - 각 업종별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
- □ 한편, 산자부는 업종별대책반을 '기후변화 포럼' 활동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
 - 이를 위해 업종별대책반에 간사를 지정하여 매월(4째 금요일)
 주요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기후변화 포럼'에 정례적으로 참석토록 할 계획
 - '기후변화 포럼'은 5개 정부부처・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으로 구성되어 주요 정책과제 등을 토의하는 종합 논의기구로,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

< 기후변화포럼 논의 주제 >

- * 6월(6.24) : ① 최근 OECD 지속가능발전위회의 등 기후변화협약 국제 논의동향. ②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계획(안)
- * 7월(7.22)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배출권거래 등 탄소시장 동향 및 국내 온실가스 시장 활성화 방안

< : , (CDM) >

- □ EU, 일본 등 교토의정서상 의무부담국들은 배출권거래제(ET),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을 통해 의무이행 노력중
 - EU는 '05.1월부터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대상 : 발전, 정유, 철강 등 20MW이상 사용 연소시설, 12,000개 사업장)를 시행
 - 배출권거래 가격이 초기 8-10유로/tCO2에서 최근 20유로帶로 상승
 - 연간 100억 유로 거래시장 형성 전망(Point Carbon社)
 - **일본**은 △6% 의무감축 목표분중 △3.9%는 흡수원(sinks), △ 1.6%는 **교토메카니즘**(CDM, 배출권거래)을 활용하여 이행할 계획
 - 일본 '2004년에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CER) 세계 총량의 41%를 구매(World Bank)
 -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 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CER: Certicified Emission Reduction)을 자국 (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s Trading):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 한편, 제18차 CDM 집행위원회('05.2)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CDM 사업 등록단계에서는 개도국의 국가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토록 결정
 - 국내에서도 2004.7월에 울산화학의 HFC열분해 사업을 CDM 사업으로 승인('04.7)하였고, 최근 한국 로디아폴이아마이드는 아산화질소(N₂O) 저감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05.4)
 - 기타 한국휴캠스와 강원풍력이 CDM 사업 승인 요청을 준비 중에 있는 등 탄소시장의 기반으로 청정개발사업(CDM)의 활성화

< 붙임 1 >

1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약속 추진(안)

1. 추진 배경

- □ 교토의정서 발효('05.2.16)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능력** 배양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에 적극 대처
 - 자발적 감축실적의 등록 및 이에 대한 정부 보상을 약속하여 산업계의 자발적인 조기 감축행동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조기감축으로 **에너지절약 및 경쟁력 제고** 효과 실현
 -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에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체계구축 과제 포함
 - ※ 법적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2, 『정부는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에 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체계적 계량화를 통해 **청정개발체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참여** 기반을 조성

2. 추진 방안

─ 〈 추진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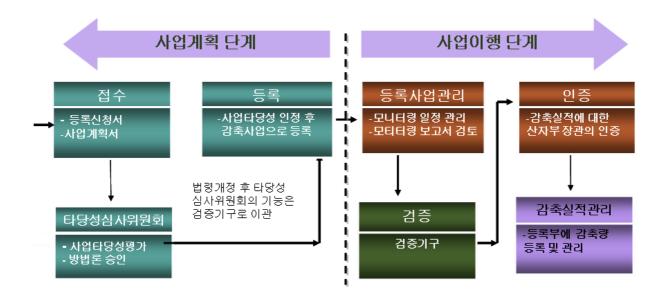
- ①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시행 및 등록 (=자발성)
- ② 향후 의무부담시 조기감축에 따른 불이익 배제 (=보장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행)

(1) 감축실적 등록

- 가. 대상사업: 일정규모 이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 □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i) 에너지효율개선 설비투자, (ii) 생산공정 개선 및 (iii)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 □ **등록대상 온실가스** : 교토의정서상의 6개 온실가스
 - 에너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및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PFC, HFC, SF₆)
 - * 세계반도체협회의 2010년까지 1997년 대비 10% PFC 배출량 감축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공정부문의 감축실적 등록체계 필요
 - □ 최소 감축규모 : 연간 500tCO₂(약 160TOE) 이상 감축 사업
 - 등록관련 행정비용(약 300만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수준의 의미 있는 감축량(500tCO₂)
 -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약 300만원)에 대하여 예산범위내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CER(감축실적)의 국제거래 가격 이 5-6US\$/tCO2임을 감안하여 500tCO2를 최소 감축규모로 설정
 - □ **사업 기준일** :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05.3/4) 이후에 시작된 사업
 - 다만, 감축실적 등록시범 사업('04.9~'05.6)에 참여한 사업은 등록대상에 포함

나. 등록절차: :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 결정

□ 등록 및 인증 절차(안)



□ 담당기관

- 접수·등록·인증·감축실적관리 : 산자부(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감축실적** 등록소를 설치
 - * 타당성 심사위원회 :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
- 타당성 검토 및 검증 : "(가칭)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 기관"지정
- 온실가스 감축사업계획서상의 기준배출량(baseline) 방법론과 사업시행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거로 감축실적을 검증

(2) 감축실적 평가 및 관리 방안

□ 평가방안

-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계수를 고려**한 감축실적 평가
- 감축실적 전문기관에서 기준배출량(Baseline)과 측정된 온실 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감축실적 평가를 실시

□ 보상방안

- 등록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보상 약속을 사업** 시행시점에서 명확히 하고, 구체적 보상방안은 추후 제시
 - 향후 의무부담 확정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방식 도입 등의 정책과 연계한 보상방안 강구
 -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한계저감비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보상방안 수립·제시
- 기업의 자발적 참여 촉진 및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에
 따른 소요 행정비용은 등록확정시 예산범위내 보상 추진
- '06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사업비내에서 **감축실적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보상
 - * 온실가스 감축실적 시범사업(04.9-05.6)의 경우, 평균 3백만원의 행정비용 소요

- 3. 향후 조치계획: 제도·법령 정비 등
 - ① 감축실적 등록소 개소('05.7.14일)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신청·등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등록소를 개소
 - ②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마련 ('05.7월중)
 -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
 - ③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 접수('05.4/4)
 - ④ 500tCO₂ 이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간소화된 등록절차 및 규정 마련('06년 상반기)
 - ⑤ 검증기관 지정('06년 하반기)
 - 사업 타당성 심사 및 감축실적 검증 업무를 담당할 "(가칭)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전문기관"을 지정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시 후, 2-3년 후에 실제로 감축실적이 발생하므로, 검증 기관 정비는 사업 등록후 단계적으로 추진

< 참고 2 >

2 현행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계 및 내용

- 1.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현황
- □ 조직 : 범정부 대책기구 및 산업계 업종별대책반 구성·운영
 - '98. 4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01.9월 **기후변화협약대 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로 확대·개편 운영중
 - 구성: 재경·외교·과기·산자·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 기능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과 총괄조정
 - 산자부 민관합동 기후변화협약대책단("기후변화 포럼"), 8개 업종별대책반('04.12) 구성·운영
 - 산자부내 기후변화대책 전담팀 구성('05.2.14)
- □ 정책: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수립·추진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제1차 종합대책(99~01)** : 부문별 감축사업, 감축기반 구축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36개 과제
 - **제2차 종합대책(02~04)** : 협상역량 강화, 교토메카니즘 대응 기반 구축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등 84개 과제
 - **제3차 종합대책(05~07)** : 협상이행기반 구축사업, 분야별 온실 가스 감축사업,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90개 과제(산자부 35개)

2. 제3차 정부종합대책(05~07년) 개요

□ 추진 방향

-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추진 목표

- ㅇ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소한으로 유지
 - 1차(99~01) : 4.5%, 2차(02~04) : 3.5%, **3차(05~07) : 2.1**% 목표
- ㅇ 에너지原단위 개선
 - $(99) \ 0.319 \rightarrow (01) \ 0.305 \rightarrow (04) \ 0.303 \rightarrow (07) \ 0.277$
 - ※ 에너지원단위(TOE/천\$) : GDP 1천달러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 추진 과제

- o 협약 이행기반 구축 : 총 29개 과제
 - 의무부담 협상대책마련, 온실가스 통계작성, 온실가스 감축연구 개발, 교육·홍보,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등
- ㅇ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총 45개 과제
 - 에너지 절약대책강구,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건물·수송· 폐기물·농축산·임업부문 등
- ㅇ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 총 16개 과제
 -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구축, 생태계 및 건강영향평가 등

□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

가. 협약이행 기반구축 사업

- 제2차 이행기간('2013~'2017)에 대한 감축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방식 및 대응논리 개발
 - 의무부담 참여압력에 공동대응키 위해 주요국들과의 공조체계 강화 및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적극 지원
- 국제 온실가스 통계기준에 따른 **국가온실가스 통계 구축**,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 반영 및 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대책단의 자체계획 수립·추진 지원
 - ※ 업종별대책단: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자발적 협약 사업, ESCO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자금 및 세제 지원
-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및 발전차액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추진**
- 건물 설계단계의 에너지 절약기준 강화 및 건축물별 에너지 총량 관리
- 간선급행버스 도입,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송·교통부문 에너지 절약
- o 숲가꾸기, 도시숲조성의 지속 확대추진으로 **산림흡수원 확충**

다.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 o 기후변화 정보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한반도 미래 기후 변화 분석
- o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 및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
- o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 기후변화협약대책 정부추진 체계도 >

기후변화협약대책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재경부·과기부·외교부·행자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재경부·과기부·외교부·행자부· 세경구·파기구·되교구·정시구·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차관, 국정홍보처차장 통계청장, 농진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위원 : · 6개 대책반장 및 관계부처 국장 · 에관공 이사장, 에경연· 에기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에너지 · 산업 대 책 반 농림대책반 협상대책반 환경대책반 연구개발반 총괄대책반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홍보처, 통계청 산자부 외교부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재경부 과기부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전문가 pool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건설기 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기상연구소, 산업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연구소, 해양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 붙임 3 >

3 │ 산업계 업종별대책반 활동 및 기후변화 포럼 활동

- 1. 8개 업종별대책반 구성 및 활동
 - □ 산자부는 지난 6.17(금), 2004.12 발족한 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대책반 상반기 활동 점검회의를 개최
 - 점검 결과, 협회 중심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제고하고 업종별 배출량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
 - □ 향후, 업종별대책반에서는 외국 선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 일본의 "자주행동계획"과 같은 업종별 자발적 감축계획을
 2007년말까지 수립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

(1) 추진현황

○ '04.12월 발전·정유 등 에너지다소비 8대 업종별대책반 구성

○ 반장 : **담당과장, 관련협회 상근부회장(또는 임원) 공동** 반원 : 사무관, 협회, 에관공, 학계, 주요기업 등 10명 내외

 업 종	발 전	정 유	철 강	석유화학
부 서	총괄정책과	석유과	기초과	기초과
	간사	석유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
기 업	발전사 5사	SK,LG등	포철 등	LG 등

<u>업</u> 종	시멘트	제 지	자동차	반도체
부 서	생물화학	생물화학과	수송기계과	반도체과
협 회	양회협회	제지협회	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기 업	쌍용 등	한솔 등	현대,GM대우등	삼성,하이닉스

- 운영: 업종별로 월별 1회(또는 격월) 개최
- 주요 활동실적
 - i) 기후변화협약대응 홍보·교육
 - 세미나 개최 : 발전(5.31), 철강(6.2, 6.28-29), 석유화학(6.2)
 - ii)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및 양식 검토
 - 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지침 및 양식개발('04.5~'05.3)과 연계: 발전, 정유, 철강, 제지 등
 - iii) 선진 기업의 기후변화 협약 대응사례 연구
 -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제지 산업대책반
 - iv)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계획(안) 논의
- (2) 향후 운영방안 및 활동목표
 - 월별 1회 업종별 대책반 회의 정례 개최 (필요시 격월)
 - 단기 활동목표: ① 기후협약 대응 홍보·교육(업종내 및 업종별 정보격차 해소), ②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 (「기업별 온실가스 산정지침 개발」 및「저감잠재량 분석」계획과 연계), ③ 선진기업의 대응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
 - 장기 활동목표 : ① 업종별 자발적 감축대책 수립('07말) →
 ② 기업의 경쟁력 강화

2. 기후변화 포럼 구성・활동

□배경

- 교토의정서 발효('05.2.16)로 금년말부터 교토체제 이후(Post-Kyoto) 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본격 시작
- 이에,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이 협약 동향, 협상대응 전략 수립 및 기후협약 대응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부·기업의 정책 방향 논의 및 정책과제 발굴을 도모

□ 추진현황

- '04. 2월 구성된 협상대책반(산자부, 에경연 등 10여명)을 '04. 7월 부터 참여기관 및 전문가를 확대, 기후변화 포럼* 매월 운영
 - * 정부 4, 정부출연 5, 산업계 9, 학계 3 등 40여명(20명 내외 참석)
- '05. 3월부터 기후변화포럼의 참여자를 보강, 확대

□ 운영방식

- 이 성격: 정보 공유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포럼
 - 산자부(자원정책국장) 주관하에 외교·환경·국조실·지속위 등 정부기관(과장급), 전경련·대한상의의 환경대책반 및 에경 연·에관공 등 전문가로 보강하여 산업분야에 대한 종합적 논 의기구화 → 논의 사항은 정책 반영 추진
- 개최 : 매월 1회 각 기관별로 주제를 정하여 순회 개최 (매월 3째주 금요일 원칙하에 매월 차기 모임 일자·장소 결정)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산업부문 전문가 포럼(6월) 개최

□ 목적

○ 기후변화 협약 대응방안 등 대한 산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정책과제 발굴

□ 주제(안)

- ① 포스트 2012 협상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최근동향(OECD 지속가능발전위회의+제22차 부속기구회의) 포함)
- ②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계획(안)
 - * 3월: (1)산업계 건의사항, (2)기후변화포럼 운영 활성화 계획
 - * 4월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계획(안)
 - * 5월 : 기후변화협약 제22차 부속기구회의(5.16-27) 참석

□ 일시 및 장소: '05.6.24(금) 16:00-18:00, 에너지경제연구원

□ 참석

- 산자부 및 관계부처 : 자원정책국장, 기후변화대책팀장, 사무관 등
- 정부출연기관(5): 에경연, 환경연, 에기연, 환경공, 에관공
- 산업계(12): 대한상의, 지속가능기업발전위, LG환경연, 삼성연 등
- 학 계(3): 강희정(건국대), 강승진(산기대), 전의찬(세종대)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고(발표자/진행)
16:00-16:30	ㅇ 포스트-2012 협상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등	임재규 박사(에경연)
	ㅇ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계획(안)	조영신 팀장(산자부)
16:30-17:50	안건 토론	(에너지경제연구원)
17:50-18:00	향후일정 논의	(주봉현 국장)

^{* 7}월 의제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배출권거래 등 탄소시장 동향 및 국내활성화 방안